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변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정된 선순위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 ----- ----- ----- ----- ----- ----- ----- -----.
② · ③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